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2. 12.(목)

<전신마취유도제>

‘에토미데이트’,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관리가 강화됩니다

- 에토미데이트, 수입부터 투약까지 전 단계 관리·잠금 보관 의무화
- 온라인 불법 판매·알선 광고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·남용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전신마취 유도제 ‘**에토미데이트***’를 **2월 13일**부터 **마약류**로 **전환·관리**한다.

* 2025.8월 마약류로 지정

이에 따라 **2월 13일부터** ‘에토미데이트’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, 판매, 구입, 폐기, 투약 등 모든 단계의 **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**이 되며, **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**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·관리해야 한다.

식약처는 마약류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**수입업체와 공급 상황**을 **사전**에 **협의**하였으며, 에토미데이트를 주로 취급하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**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**을 **배포**하여 마약류 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.

또한 처방, 도매 등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하여 에토미데이트의 **마약류 취급 보고**가 **원활**하게 될 수 있도록 **시스템 환경**도 **조성**했다.

아울러, SNS·일반 웹사이트 등 **온라인 상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·알선 광고**에 대한 **기획·상시 모니터링**을 실시한다.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**사이트 삭제 및 접속 차단**을 **요청**하고, 판매 정황 등이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**수사의뢰**할 예정이며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경우 **현장점검**도 실시할 계획이다.

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'에토미데이트'의 **불법 유통**을 **방지**하고 **오·남용**을 **예방**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**의료용 마약류**의 **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**을 위해 **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**을 **지속**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홍보 포스터
2. 자주 묻는 질의·답변

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.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·지인이 있다면,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☎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담당 부서	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은주 (043-719-2893)
		담당자	연구관	박은혜 (043-719-2898)
	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현철 (043-719-2808)
		담당자	사무관	이영희 (043-719-2802)
	마약안전기획관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	책임자	과 장	강영아 (043-719-2841)
		담당자	사무관	남경우 (043-719-2842)
	사이버조사팀	책임자	과 장	박영민 (043-719-1901)
		담당자	사무관	최주영 (043-719-1920)
협업 기관	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	책임자	본부장	최광연 (02-2172-3810)
		담당자	팀 장	장재혁 (02-2172-6834)
		담당자	팀 장	박주연 (02-2172-6740)

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뒤에도 안심기준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홍보 포스터

에토미데이트(Etomidate)

이제 '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)'입니다.

2026년 2월 13일부터 시행



- ✓ 마약류취급자만 취급
- ✓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NIMS)에 취급보고
- ✓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
- ✓ 에토미데이트를 이용한 범죄 행위 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처벌

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문의 및 지원 홈페이지 www.nims.or.kr 상담센터 1670-6721

식품의약품안전처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kha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Korean Hospital Association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
붙임 2 자주 묻는 질의·답변

Q1.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이하 NIMS) 취급보고는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?

○ 시행일인 2026년 2월 13일부터 취급보고를 해야 합니다.

Q2. 마약류로 전환되는 시행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취급보고 대상인가요?

○ 시행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있는 경우 2026년 2월 13일부터 NIMS에 기재고로 등록하고 취급보고를 해야 합니다.

※ 보고관리 > 양수보고 > 판매양도 > 재고등록 거래처 선택

Q3. 기재고 등록 시 실제 구입한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?

○ 기재고 등록 시 상대거래처는 '재고등록 거래처'를 선택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.

※ 상대거래처 찾기 > '재고등록 거래처(최초등록) NIMSINIT1' 선택

Q4. 기재고 등록 시 의약품 제품코드도 보고해야 하나요?

○ NIMS 취급보고 시 기존 의약품 표준코드(품목코드)를 사용하여, 제품정보(품목코드, 제조번호, 유효기한 등)를 보고해야 합니다.

※ 의약품 표준코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가 됩니다.

○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담전화(1670-67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Q5. 처방SW에 양수보고 메뉴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?

○ 사용하는 SW에 양수보고 메뉴가 없는 경우 '구입보고'로 등록이 가능합니다.

※ 구입보고 > 상대거래처 > '재고등록 거래처(최초등록) NIMSINIT1' 선택

Q6. 제도 시행일 전에 향정신성의약품 라벨이 붙은 제품도 2월 13일부터 보고해야 하나요?

○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라벨 유무와 관계없이 NIMS에 취급보고를 해야 합니다.

※ 판매보고 > 구입보고 > 조제/투약보고 등

Q7. 유효기한이 경과된 에토미데이트를 폐기하고자 할 때 기재고로 등록한 후 취급보고를 해야 하나요?

○ 2026년 2월 12일까지 폐기한 경우에는 취급보고 대상이 아닙니다.

○ 다만, 제도 시행일에 유효기한이 경과한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재고로 등록하고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할 관청에 폐기신청 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폐기결과공문의 시행일자로 폐기보고하여 재고를 차감합니다.

Q8. 에토미데이트 보관검체, 샘플, 표준품, 시약도 보고를 해야 하나요?

○ 2026년 2월 13일부터는 샘플, 시약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기재고로 등록하고 사용 시 취급보고 해야 합니다.

Q9. 마약류취급은 처음인데 회원가입은 누가 해야 하나요?

○ 마약류취급자*인 업체 보고 관리자 1명이 NIMS에 업체(기관)사용자로 회원 가입합니다.

* 마약류취급의료업자, 마약류관리자, 마약류도매업자 등

○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담전화(1670-67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Q10. 시스템 보고를 위한 교육 자료는 어디서 확인 가능하나요?

○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(www.nims.or.kr)에 마약류 취급 보고를 위한 온라인 동영상 및 교육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.

※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관련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Q11.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라벨이 없는 경우, 비마약류에 해당되나요?

○ 2026년 2월 13일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벨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마약류로 구분됩니다.

○ 기존 보유 제품은 반품하지 않아도 되며,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非마약류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“향정신성의약품” 스티커를 부착하여 마약류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수입처(비브라운코리아)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스티커를 배부해 드리고 있으니, 제품에 부착하여 마약류로 보관·관리 및 취급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
Q12. 업체에서 배부한 '향정신성의약품' 스티커는 어디에 부착하나요?

○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용기, 포장(카톤, 박스 등)에 부착하시면 됩니다. 다만, 파손을 최소화하여 부착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(예. 미개봉 카톤인 경우, 카톤 위에만 부착 가능).

Q13.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반품 가능한가요?

○ 반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거래처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

- 2026년 2월 12일까지 반품이 가능합니다(세부사항은 거래처와 조율 필요).

* 2월 13일 이후부터는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은 자만이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할 수 있음

○ 반품하고자 하는 거래처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

- 2월 12일까지는 NIMS에 보고없이 반품이 가능합니다(세부사항은 거래처와 조율 필요).
- 2월 13일 이후부터 소유 또는 관리하던 제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는 경우, 반품 후 NIMS에 양도/양수 보고를 해야 합니다.

Q14. 에토미데이트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○ 의료용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·보관합니다.

○ 에토미데이트도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하게 보관·관리해야 합니다.

※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,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(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)를 작성·비치 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